

글로벌스탠다드 수준의 투자환경 조성

(2) 외국인투자제도(투자자등록제(ID) 등) 개선방안

발표자 송영훈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상무)

K O R E A E X C H A N G E

자본시장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를 위한 외국인 투자제도 개선방안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송영훈 상무

목 차

K O R E A E X C H A N G E

1. 검토 배경 및 논의 경과
2. 외국인 투자제도 현황
3. 외국인 투자제도 개선방안
 - 1)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 폐지
 - 2) 통합계좌(옴니버스계좌) 활성화
 - 3) 외국인 장외거래 유연화
4. 제도 개선시 기존체계 영향
5. 영문공시 단계적 의무화
6. 향후 계획

K O R E A E X C H A N G E

1. 검토 배경 및 논의 경과

외국인 투자제도 개선 검토배경

자본시장의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하여 우리 자본시장의 매력도 제고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

- 사전등록을 의무화하여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관리하는 제도
 - '92년 외국인에게 국내 상장주식 투자를 허용하면서 도입
 - 지금까지 약 30년간 개선 노력이 없었음

통합계좌 (옴니버스계좌)

- 통합계좌(옴니버스 계좌)는 외국인 투자자의 거래 편의를 위해 '16년 도입
 - 도입 이후 현재까지 개설사례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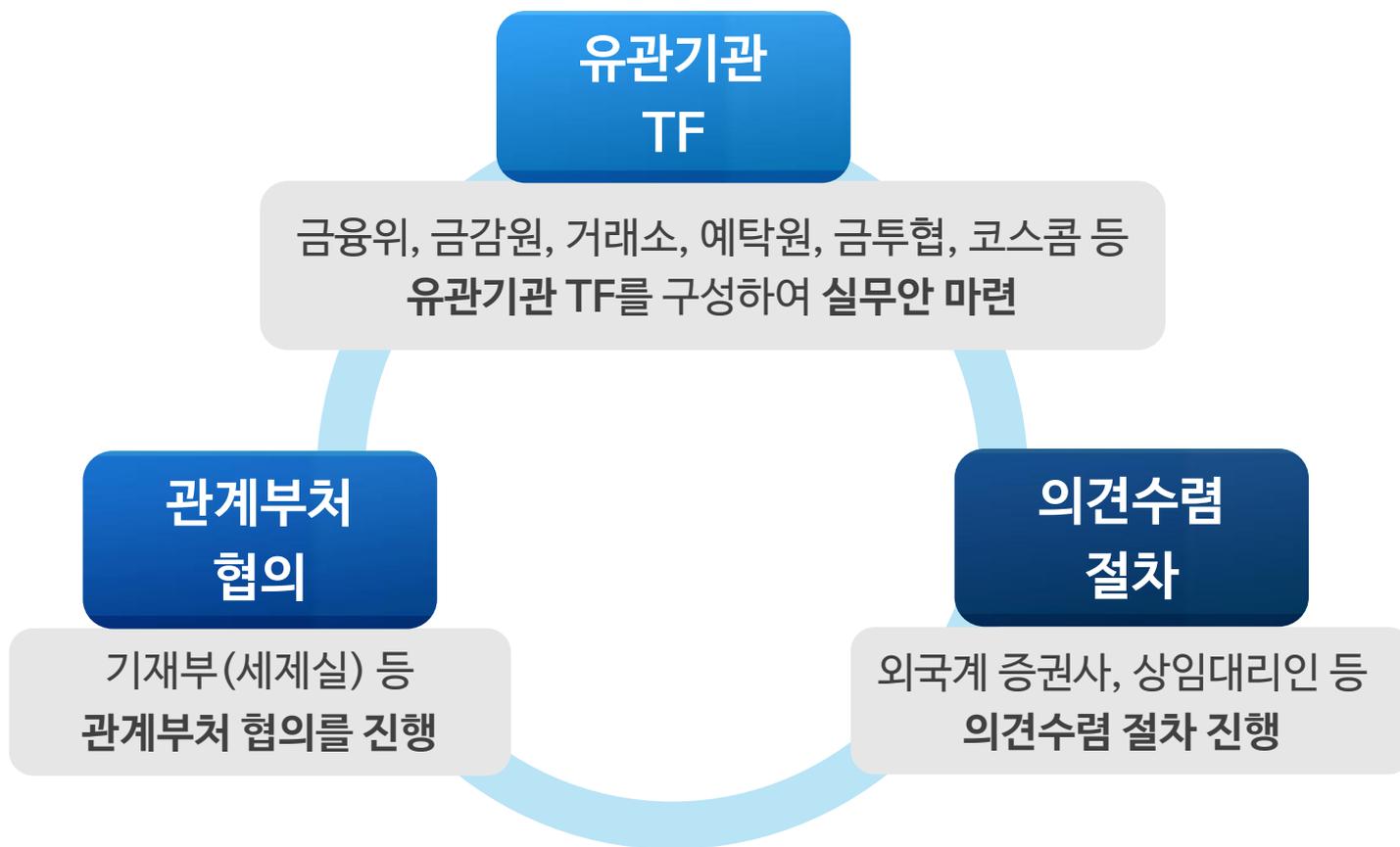
장외거래

- 외국인 투자자의 장외거래 원칙은 사전심사이며, 예외적으로 사후신고
 - 사전심사시 시간이 오래 걸리는 등 부담이 크다는 지적

※ MSCI도 '22.6월 접근성 평가에서 외국인 투자제도에 대한 제도개선 필요성 지적

외국인 투자제도 개선 논의 경과

- '22.6월부터 유관기관 TF 운영 및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외국인 투자자가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추진



K O R E A E X C H A N G E

2. 외국인 투자제도 현황

외국인 투자제도 구성

①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 ② 외국인 통합계좌, ③ 외국인 장외거래 제한으로 구성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

- 상장증권 최초 취득시 '투자등록번호' 발급 및 인적사항 등록
 - 외국인 본인 또는 대리인이 금융감독원에 신청서를 접수하거나, 상임대리인을 통해 신청서 송부
 - 금감원 등록 접수 후 외국인투자관리시스템*에 관련 정보를 입력
- * FIMS (Foreign Investment Management System)

외국인 통합계좌 (Omnibus Account)

- 다수 투자자 매매 통합처리(주문·결제) 목적의 글로벌 운용사 명의 계좌
- 최초 계좌 개설시 최종투자자 목록을 등록하고, 결제 즉시(T+2) 최종투자자별 투자내역 보고

외국인 장외거래 제한

- 외국인은 상장증권의 장내거래가 원칙
 - 장외거래는 사전심사를 받아야 하며, 예외적으로 열거 거래*는 사후신고 가능
- * 조건부매매, 직접투자, 스톡옵션, 상속·증여, CB·BW 권리행사 등

외국인 투자제도 활용 세부현황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기반으로 과세, 모니터링 등 진행



식별수단

외국인 투자자 등록시 “외국인투자등록증” 발급

- 금융기관 계좌 개설시 실명확인 증표로 사용가능
- 등록증상 투자등록번호를 FIMS에서 식별수단으로 활용



과세

FIMS 내 국적정보를 원천소득 과세에 활용

- 외국인 투자자의 국적에 따라 해당 국가의 조세협약 등 적용



취득한도

기간산업을 영위하는 상장법인 주식*의 취득한도 제한

*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등 총 33사

- 외국인 매매주문시, 취득한도 관리종목은 FIMS를 통해 잔여한도 사전확인



모니터링

FIMS에 수집된 정보로 외국인 투자동향 모니터링

- FIMS 거래내역을 활용하여 시장감시 및 공매도 모니터링, 투자동향 발표

K O R E A E X C H A N G E

3. 외국인 투자제도 개선방안

1)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 폐지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개선안

I (해외현황) 주요 선진국 중 등록제를 운영하는 국가는 없음

- 베트남, 인도, 대만 등에서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를 운영중
 - ※ (참고) 미국·독일·일본 등은 국가안보 분야 등 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심사 제도를 운영

I 외국인 투자자 등록의무 폐지

현행
◆ 외국인 투자자 ID 발급



개선안
◆ LEI(법인) · 여권번호(개인)로 대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同 식별번호를 활용하여 계좌 개설 관리• 기존 등록자는 투자등록번호 사용 가능

LEI (Legal Entity Identifier) 개요

- ◆ (개념) 금융거래 참여 전세계 법인에 부여하는 표준화된 20자리 ID
 - '08년 금융위기 이후 거래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도입('11년)
- ◆ (현황) '22.8월 기준 총 209만개의 LEI가 발급, 대부분 금융회사는 既발급
- ◆ (특징) 법인 뿐만 아니라 집합투자기구(펀드)에도 발급이 가능 (1년마다 코드 갱신하여 정보 최신화)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개선안

외국인 투자내역 모니터링 방식 개선

현행

- ◆ FIMS를 통한 실시간 사전 관리 체계
 - 식별수단과 계좌정보 사전등록



개선안

- ◆ 사후관리 중심으로 전환
 - 사전등록제 폐지
 - 통계 정보는 실시간 유지

금융당국은 증권사의 투자자 관리 수행 여부 감독 및 시정요청

- ◆ (시장감시 등) 개인별 투자내역 필요시 건별로 증권사에 요청하고 제공 받음
 - 증권사의 불응·부정확한 정보 제공시 제재 등 조치
- ◆ (투자한도 관리) 여권번호, LEI 등을 통해 실시간 관리 가능(전과 동일한 방식)
- ◆ (통계) 거래내역(식별정보 X)은 FIMS에 동일하게 제공되어 기존과 같이 투자동향 파악 가능

K O R E A E X C H A N G E

3. 외국인 투자제도 개선방안

2) 통합계좌(옴니버스계좌) 활성화

외국인 통합계좌 개요 및 개선안

■ **통합계좌(Omnibus Account) :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다수 투자자의 매매를 단일 계좌에서 통합 처리(주문·결제)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계좌**

- 최초 통합계좌 개설시 최종투자자 목록 등록(외국인 투자자 등록을 한 자에 한정)
- (문제점) 통합계좌의 경우에도 결제즉시(T+2) 최종 투자자별 투자내역을 감독기관에 보고
→ 규제 부담으로 '16년 도입 이후 개설 사례는 없음

현행

◆ 통합계좌 명의자 및 최종투자자 모두 투자등록

◆ 최종투자자별 투자내역 보고

개선안

▶ ◆ 최종투자자는 별도 투자등록 없이 통합계좌 사용 가능

▶ ◆ 최종투자자별 투자내역은 증권사가 보관

외국인 통합계좌 세부개선안

I 투자내역 보고의무 폐지 및 사후관리 체계 마련

투자내역 보고의무 폐지

- ◆ 통합계좌 명의자(글로벌 운용사 등)는 최종투자자를 확인
- ◆ 증권사는 세부 투자내역 자체보관
- ◆ 1인당 한도 관리 종목(한전, 가스공사)은 통합계좌 거래 금지

사후 관리 체계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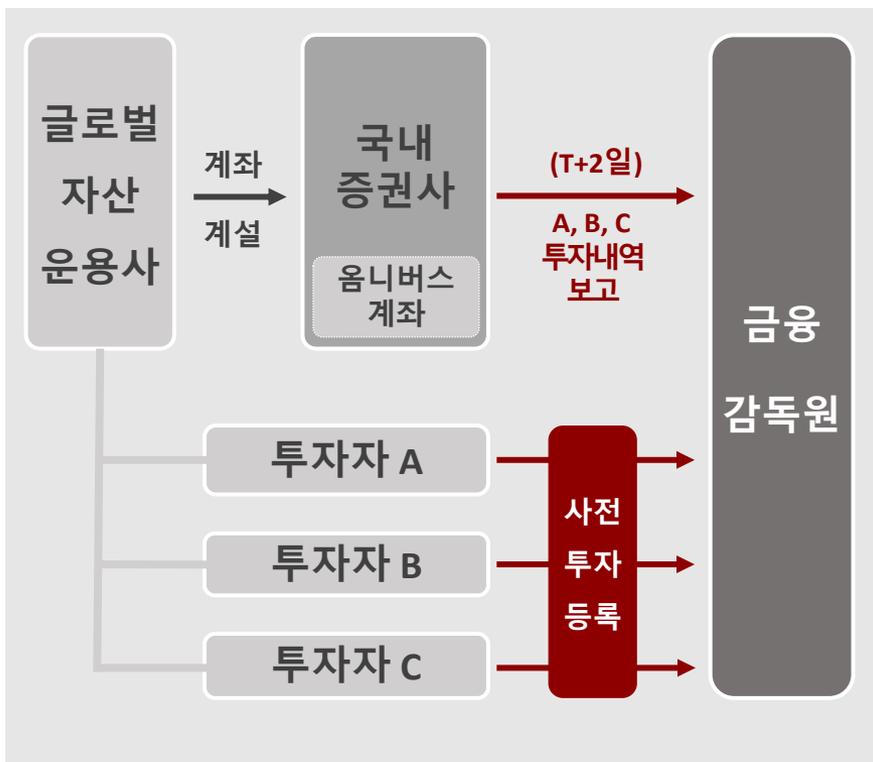
- ◆ 금융당국·국세청 등에서 감독 또는 과세목적으로 필요시 최종투자자 정보 및 세부 투자내역을 요구하여 징구
- ◆ 증권사 등의 불응·부정확한 정보제공시 제재수단(거래정지 등) 강화

개선된 방식의 외국인 통합계좌 시범운영 후 시행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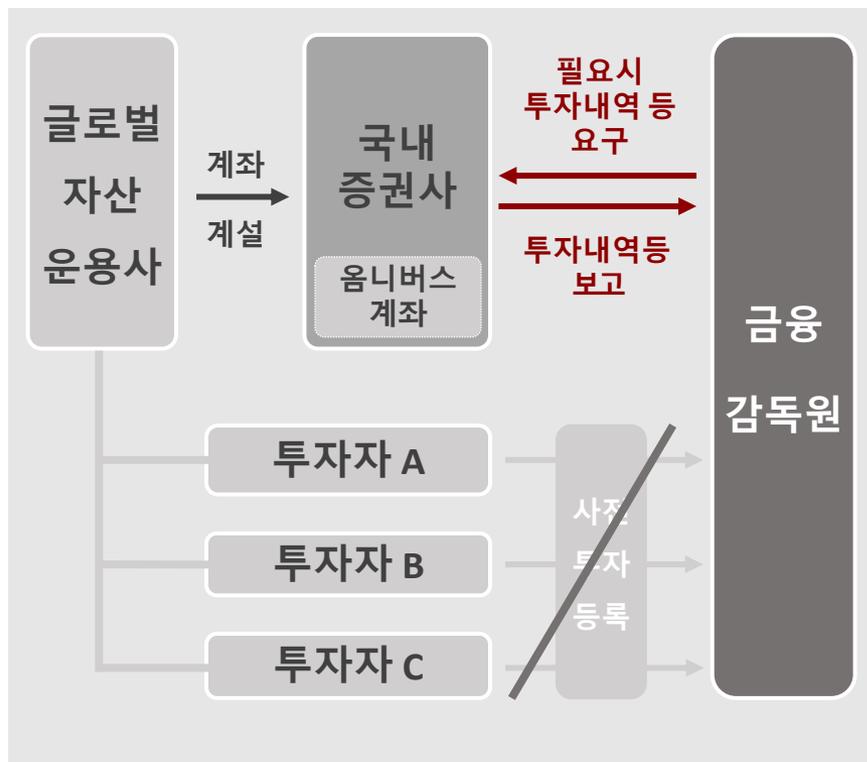
외국인 통합계좌 개선시 절차 비교

투자내역 보고의무 폐지 및 사후관리 체계 마련

현행



개선안



K O R E A E X C H A N G E

3. 외국인 투자제도 개선방안

3) 외국인 장외거래 유연화

외국인 장외거래 제한 현황 및 개선안

I 외국인 장외거래 허용 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거래 편의성 증대

🕒 장외거래 허용범위가 좁고, 신고부담이 크다는 지적

🕒 사전심사 없이 장외거래가 가능한 범위가 제한적이고, 사후신고시 신고수리(서류심사) 부담 등 존재

현행	개선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한적인 장외거래 허용<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건부매매, 직접투자, 스톡옵션, 상속·증여, CB·BW 행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전심사 필요성이 낮은 유형을 허용대상에 추가<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질적인 소유자 변경이 없는 펀드합병 등◆ 그 외 건들도 유형화하여 허용대상에 포함<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 기업합병·구조개편, 상장주식의 현물배당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용대상 거래 신고수리 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류심사 대상 대부분을 FIMS에 바로 입력<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건부매매, 직접투자 등에 대한 신고부담 감소◆ 나머지 서류심사 대상도 증빙서류 간소화

K O R E A E X C H A N G E

4. 제도 개선시 기존체계 영향

제도 개선시 외국인 투자자 감독 방안

■ 제도 개선안대로 시행하더라도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관리체계 유지



식별수단

법인은 LEI, 개인은 여권번호를 식별수단으로 활용

- 기존과 동일하게 외국인 투자자별 식별 가능
- 외국인투자등록증 발급은 중단되나, 여권·법인설립증명서 등 사용 가능



과세

국적정보를 활용한 금융소득 원천징수 가능

- 등록제 폐지 후에도 LEI, 여권번호를 기반으로 국적정보를 관리



취득한도

현재와 동일하게 외국인 투자자 취득한도 관리 가능

- 거래소에서 제공된 거래내역(식별정보X)으로 전체 외국인 보유현황이 확인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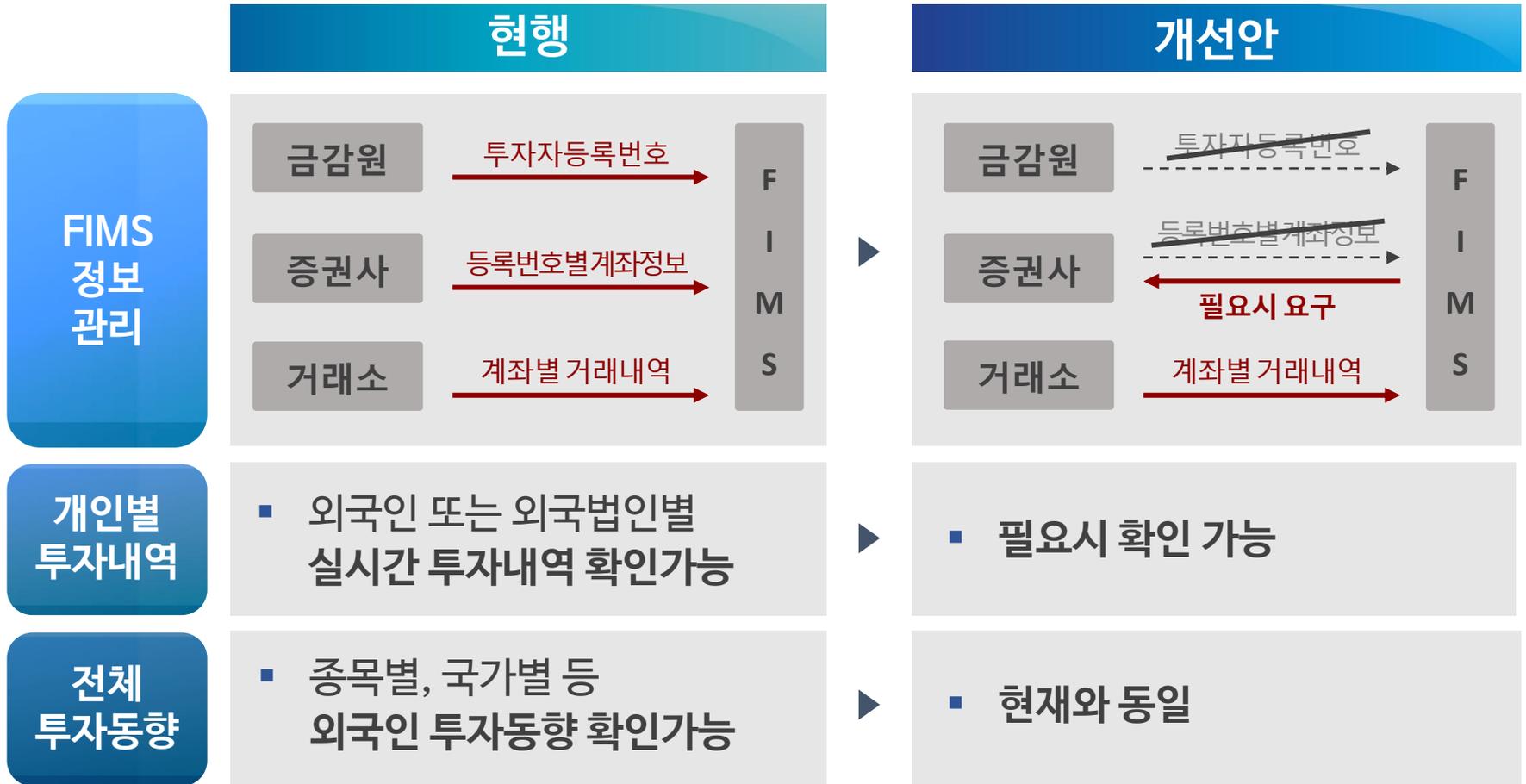
모니터링

기존과 동일한 수준의 시장감시 가능

- 필요시 건별 외국인 투자내역 증권사 요청 및 확인

제도 개선시 외국인 투자 모니터링 방안

I 동 제도 개선시에도 기존과 동일한 수준의 시장 모니터링 가능



K O R E A E X C H A N G E

5. 영문공시 단계적 의무화

영문공시 현황 및 활성화 방안

I (현황) 영문공시 제공 방식 : 영문 자동변환 + 상장법인 작성·제출

① 영문 자동변환

상장법인이 국문공시를 제출하면 거래소가 실시간으로 영문 자동변환

② 상장법인 제출

상장법인이 국문공시 제출 후 1주일 이내에 자율적으로 영문공시 작성·제출

- 상장법인 영문공시 제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영문 번역지원 서비스 제공 중(*20.9월~)

➤ 영문공시 확대 위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자 수요 충족에 미흡한 측면

- 국내 자본시장에서 영문 공시정보 부족은 증시 저평가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의견

I (개선) 영문공시의 단계적 의무화를 추진하면서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병행 시행

영문공시 단계적 의무화

- ◆ 단계적 의무화를 통해 영문공시의 지속적인 양적·질적 성장 도모
 - 상장법인 부담을 감안해 대상법인·대상공시 등 점진적 확대 방안 검토 중

영문공시 종합 지원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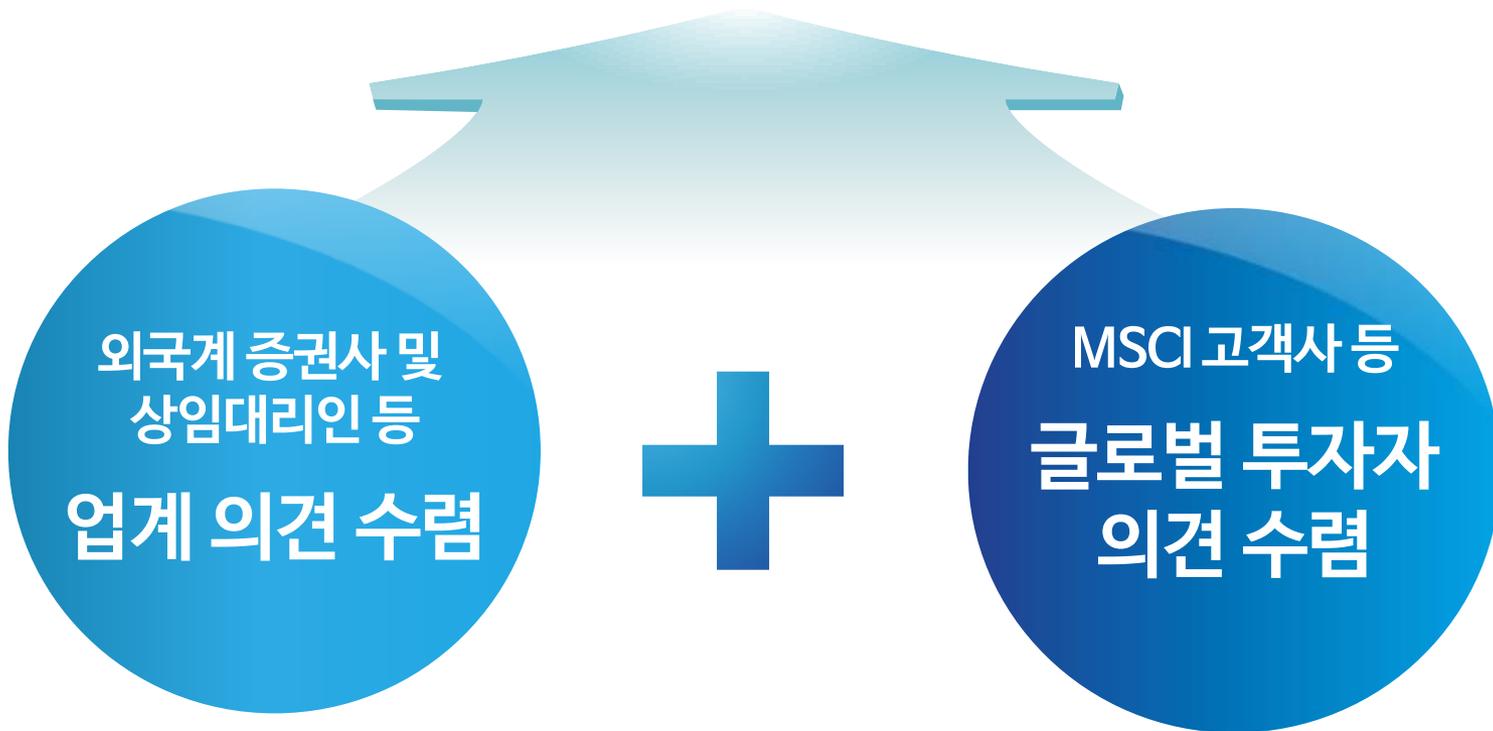
- ◆ 상장법인 영문공시 역량 강화를 위한 종합 지원 방안 시행
 - 제3기 영문 번역지원 서비스 확대 운영, AI 번역 인프라 활용 방안 모색
 - 영문공시 교육 강화, 영문공시 관련 제도 재정비 등 종합 시행

K O R E A E X C H A N G E

6. 향후 계획

향후 개선방안 추진 계획

▶ 외국인 투자제도 개선방안 최종 발표 (연말연초 예정) ◀



K O R E A E X C H A N G E

감사합니다

글로벌스탠다드 수준의 투자환경 조성

(1) 배당절차 선진화 및 배당활성화

(2) 외국인투자제도(투자자등록제(ID) 등) 개선방안

발표자	정준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표자	송영훈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상무)
사회자	이인무 (KAIST 경영공학부 교수)
패널	변중석 (UBS 상무)
	이기환 (인하대학교 금융투자학과 교수)
	권재열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
	이윤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